포항시 고시 제 2013 - 129호

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제35조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(선장 및 선원 포함)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10. 29.

포 항 시 장

- 1. 목 적 :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(선장 및 선원포함)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근 거 :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
- 3.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가. 영업시간의 제한

- 영업시간 : 하절기(4.1~10.31)는 04:00~22:00까지로 동절기(11.1~ 다음해 3.31)는 04:00~20:00까지로 한다.
- 등화, 레이다, 무선설비,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어선설비기준(농림수산식품부 고시) 및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(농림수산식품부 고시)에 적합하지 않는 낚시어선은 야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영업구역의 제한

○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제한 및 통제구역,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 등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.

다. 기타 제한사항

- 위 항에 제한되지 않는 시간 및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낚시어선 운항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상 해양경찰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위 사항에 따른 대피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피를 시킬 수 없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 또는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 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4. 낚시어선승객 준수사항

가.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이 후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 항을 위한 선장(선원)의 지도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.

나.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전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 후 승선하여야 한다.

다.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하고 있을 때 및 갯바위·육지와 떨어진 장소 등에서 낚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구 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
라.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대피를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승선 및 회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마.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
- 낚시어선에서 음주행위 및 위험물의 반입 및 운송, 기타 안전운항 을 방해하는 행위

-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류(油類), 분뇨, 미끼 및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
-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된 수산동물의 포획금지기간·어종 및 체장 등을 위반하여 포획하는 행위

바.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행위 중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고시(포항시 고시제2013-24호)는 이를 폐지한다.